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4. 4. 25(목) 10:00

## 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문화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26호
- 나. 제 출 자 : 장규권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4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4. 15.

## 2. 제안이유

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설치 범위 등을 정하고,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공중화장실에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제1항 신설).
- 나. 안전관리 시설(비상벨) 설치 의무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제1항제6호).
- 다.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기준을 규정함(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).
- 라. 공중화장실 유지·관리에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함(안 제8조).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7조, 제7조의2, 제8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등 의무 설치를 규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사용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.

### 나. 주요 내용

#### 1)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제1항 신설).

○ 공중화장실의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함

#### 2) 안전관리 시설(비상벨) 설치 의무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제1항제6호).

○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의무설치하여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.

#### 3)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기준을 규정함(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).

○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기저귀교환대 설치 규격을 규정함

#### 4) 공중화장실 유지·관리에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함(안 제8조).

○ 법 제8조제3항의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적용함

### 다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여 공중화장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와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보다 쾌적한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

# 관계법령

## 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7. 21.] [법률 제18302호, 2021. 7. 20., 일부개정]

**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 증진,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·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**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,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·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·소변기 수의 1.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, 휴식시설,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8조를 준용한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(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)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21. 7. 20.>

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7. 20.>

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「하수도법」에 따라 처리한다. <개

정 2021. 7. 20.>
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**제7조의2(어린이용 대·소변기의 설치 등)**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·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.

-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22.>

**제8조(공중화장실의 관리)**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·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(이하 “공중화장실 관리인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-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7. 20.>

-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23. 11. 16.] [대통령령 제33858호, 2023. 11. 16., 타법개정]

**제2조(공공기관의 범위)**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06. 11. 9., 2009. 5. 6., 2013. 10. 16.>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·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

**제7조(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)**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 5. 6., 2014. 12. 3., 2017. 5. 8., 2018. 9. 4., 2018. 12. 18., 2023. 11. 16.>

1.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,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
2. 악취의 발산과 파리·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·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

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,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 
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

3.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
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.

가.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  
된 경우

나.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

4.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. 다  
만,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  
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.

5.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,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  
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  
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

6. 그 밖에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 또는 구(구는 자치구를 말하며, 이하  
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## □ **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**

[시행 2021. 12. 23.] [행정안전부령 제764호, 2021. 12. 10., 일부개정]

제4조의2(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)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 
정하는 규격”이란 별표를 말한다.